

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3호2서식] <개정 2021. 6. 23.>

대 통 령 비 서 실

수신자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귀하 (우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3층)

(경유)

제 목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

접수일 및 접수번호	접 수 일 : 2024. 12. 04. 접수번호 : 13426707
청구정보 내용	[국무회의 회의록] 2024년 12월 3일, 12월 4일 진행 국무회의 회의관련 :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무회의 회의록
이송기관, 이송일자	이송기관 : 행정안전부 이송일자 : 2024. 12. 12.
이송 사유	○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되어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제4항에 의거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감사합니다.
그 밖의 안내사항	해당없음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4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은 위와 같은 사유로 기관이송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,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.



대통령비서실장

행정요원 이 메시지비서관 최진웅

협조자

시행 메시지비서관실-537(2024. 12. 12.)

우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

전화번호 02-000-0000 팩스번호 02-000-0000 / -@president.go.kr

/ 공개 구분

유의사항

청구인은 정보공개시스템 및 타 시스템 연계를 통해 통지된 문서를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